

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인가?

1. 의의 : 특허·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된 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서 다음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(특·실의 경우)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함.

2. 우선심사 대상

- ㉠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
- ㉡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(국익 및 공익보호차원) :
 - 방위산업분야의 출원,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,
 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,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,
 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,
 -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,
 -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 출원,
 -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

3. 우선심사의 신청요건

- 심사청구된 출원(특·실의 경우에 한함)
- 대상 ㉠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,
대상 ㉡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또는 조기공개 신청시에만 가능
-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, 납부자번호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

4. 우선심사의 결정

해당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

5. 문의처 : 특허청 심사조정과 (042-481-5406)